

제목

1) 서론

최근 들어 범죄자의 인권 존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여러 말들이 있지만 나는 범죄자의 인권은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아동 성학대 전과자가 공무원이나 직업군인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가벼운 형을 선고 받은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공무원과 군에서 일하게 될 수 있게 돼서 논란이 생기고 있다. 필자는 아무리 범법자여도 나라에서 정한 처벌대로 짓값을 치루면 일반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직업군인으로 임용할수 없게 만드는 법률은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를 여기는 법률이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박사라, "아동 성학대범 영구적 임용 제한은 부당" 헌재 판단 논란", 2022년 11월24일 수정, 2022년 11월26일 접속,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4610

2) 본론1

나는 범죄자라고 직업 선택에 있어서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인권을 억압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법을 어긴 범죄자라 하여도 인권을 억압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이다. 그리고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서조차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하다. 하지만 제한하는 경우에서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명시되어있다.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에서도 범죄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존중해 주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근대 철학자인 홉스는 인간은 누구나 자연상태에서 태어나며 자연으로부터 평등하게 부여받은 절대적 권리와 자유를 자유로이 향유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과거에도 인권은 존중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천부인권이라는 말이 있다. 하늘이 사람에게 내린 것이라는 뜻으로 모든 이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회학 용어이다. 이렇듯 인권은 존중 받아 마땅하며 모든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런데 아무리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함이라 해도 범죄자의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그건 인권침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 나무위키

본론2

짓값을 치루고 나온 범죄자는 이 나라의 법에서 인정하는 선의 처벌을 받았고 그 처벌을 받았으므로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는 전자감시제도가 존재한다. 전자감

3) 김수연, [전자발찌 A to Z]②과잉금지원칙 위배·인권침해일까...법원·전문가 판단은, 2022년 10월14일 등록,

시제도란 석방 또는 가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손목 또는 발목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시켜 무선장비를 이용해 원격으로 감시하는 장비이다. 한 기사의 내용을 보자. “헌법에는 전자감시제도를 '보안처분'으로 본다면 그 필요성과 비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다. 이에 일각에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최대 30년(최장 45년)인 것이 지나치게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아무리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지라도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또 원래의 형기를 마친 다음 재범 방지를 위해 다시 일정 기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것이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논란도 나온다. 실제 상습 강도강간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에게 형기를 마친 뒤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한 피고인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이중 처벌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상고했다.” 라고 한다. 필자는 이 기사를 읽고 대한민국 법이 여러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의 실제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또한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감시제도는 한번 처벌을 받은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벌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걸 이미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 감시제도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 뿐만이 아니라 그 지인,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그러므로 범죄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악법이다.

본론 (3)

여러 사람들이 범죄자가 나라일을 하는 공무원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 되어도 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필자는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여도 이미 나라에서 정한 짓값을 치루었고 나왔으므로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출소한 범죄자에 대해 왈가불가할 권리가 없을뿐더러 아무리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범죄자의 인권을 억압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해서 공무원 혹은 군인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와 관련이 없는 부서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배치해서 피해자와 접점이 없게 하므로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둘 다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출소하면 재범의 위험에 대해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범죄자들이 사회에 나오기까지 많은 교육과 직업훈련등을 시켜 사회에 복귀시킨다. 또한 옥내에 있는 동안 자유를 박탈해 사회에서 그냥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 또한 직업훈련을 통해 본인이 벌어들여 사는것에 대해 알려준다. 이렇게 많은 교육과 깨달음을 갖고 사회에 복귀해서 열심히 본인의 직업을 찾아 사회에 한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기피해야할 대상이 아닌 오히려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에 나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지불하다면 피해자가 받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씻어 주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범죄자라 해서 직장을 선택하는데 있어 제약을 걸고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참회하고 나온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선택하게 만드는 길로 이끌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싫든 범죄자도 사회 구성원중 하나이며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살아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기피하고 직업선택에 제한을 주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이끌면 그건 피해자 위한 길이 아닐뿐더러 사회 구성원들을 잃게 되는 행동이다.

4) 나무위키

결론

서론에 말했듯이 최근 대두되는 문제중 하나는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어차피 범죄자들과 살아 가야한다. 그럼 그 범죄자들이 나라에서 돈만 받아 먹고 사회에 봉헌하는거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나 아니면 번듯한 직장을 얻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나라에 헌신하게 만드느냐. 필자는 후자가 피해자 입장에서나 나라 입장에서나 더 좋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살 생각을 갖고 사회로 나와도 사회에서 받는 비난과 눈초리 그리고 취업나등을 겪으며 살다 보면 어쩔수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사회에 노출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본인의 번듯한 직장, 직위가 있어야만 재범을 억제할수 있다고 생각한다.